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3년 11월 30일(목)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42-331-0092/010-9355-3697)

제 목 / 이장우 시장은 유체이탈 멈추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예산은 1,5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부산, 인천 등 지역과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입니다.
 4.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수 차례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에 대한 책임을 공직사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장임을 망각하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발언입니다.
 5.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이장우 시장은 유체이탈 멈추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확인 피해 가구 수는 최소 **3290**가구 이상이고 피해 건물은 **280**채, 피해액은 **3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11월 14일 기준) 피해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피해자 지원은 요원하고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 특히 대전지역은 다가구 피해자가 많아 현행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적 어려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사이 대전시는 **2024**년 예산안을 작성 했고, 전세사기피해자법 추진 명목으로 **1,5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급량비에 **530**여만원, 복사기 임차료 **160**여만원 등 사무관리 비용이 주 사업비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 편성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감세 기조에도 증가한 홍보비, 축제 예산 등을 생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생색내기용 예산 조차 되지 못한 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전세사기피해 지원 예산에 **11**억원 편성했다고 한다. 대전시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는 이장우 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를 대응하는 대전시 불통행정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소극적 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장임을 망각하는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다. 그동안 모든 행정사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공식사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안을 승인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집행부를 압박,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라.
2.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예산을 마련하라.
3. 유체이탈 그만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라.

2023년 11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별첨 2.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중 전세사기피해자법(특별법)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전세사기피해자법(특별법) 추진		15,372	0	15,372
201	일반운영비	9,996	0	9,996
01	사무관리비	9,996	0	9,996
	○일반수용비	3,000		
	사무용품 구입	3,000,000원	3,000	
	○급량비	5,376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업무추진	8,000원*7명*8일*12월	5,376		
	○임차료		1,620		
	복사기임차료	15원*9,000매*12월	1,620		
	202	여비	5,376	0	5,376
	01	국내여비	5,376	0	5,376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업무추진	20,000원*7명*4일*12월*80%<절감>	5,376		